

[사 건 명] 행심 2019 - 8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9. 3월 말부터 1개월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6학년 0반 4명, 6학년 0반 3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칭하는 ‘달***’ 라는 단어를 만들어 ‘니 여친 달***, 지금 ~ 안하면 넌 달***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피해학생을 놀림.
- 나. 2019. 4. 26.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19. 4. 29. 청구인 측도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 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여,
- 라. 2019. 5. 22. 청구인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 조치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 조치함.
- 마. 2019. 6. 7.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을 포함한 7명의 가해학생들 중에 학폭위 위원의 자녀가 있었으며, 가해학생의 학부모인 학폭위 위원은 오프모임 2회와 단체톡방에서 교감과 교사와의 친밀함을 과시하였고, 학폭위 위원들과의 대화내용을 교류하였으며, 심지어 조치결과를 등기로 받기 전에 7명의 학부모들이 처분결과를 알고 있었음. 이는 학폭위 위원들이 비밀 준수 의무를 망각하고 유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법함.
- 나. 7명의 학생들이 같은 행동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개별적인 서면사과와 단체 사과를 진행하였으며, 똑같은 행동으로 신고 된 사안은 같은 처분을 받아야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노래를 만든 아이는 학폭위 위원의 자녀와 같은 반이며 친분이 있어서 서면사과로 처분되고, 오히려 청구인은 학교에서의 봉사 등 과중 처분되어, 이는 학폭위 위원의 자녀봐주기 편파 처분이므로 부당함.

- 다. 피해학생은 2019년 3월 초부터 청구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키가 작다고 놀렸으며, 청구인이 친구에게 귓속말 하는 것을 남자끼리 키스하고 동성연애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청구인이 학교가기 괴로워 하였음. 이에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9. 4. 15.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분리조치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하였음.
- 라.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의 조치는 학폭위 학부모위원 5인, 경찰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총 9명의 재적인원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당시 위원장 1인, 좌측 학부모위원 2인, 우측 교원 2인, 교감 1인 총 6명이 참석하였고, 경찰위원은 없었으며 학부모위원도 단 2인뿐이었음.
- 마. 2019. 4. 26.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및 대면사과를 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하였으며, 2019. 4. 26.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개인정보 이유로 공유하지 않았고, 2019. 5. 13.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게 반성하느냐는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으며, 조사 말미에 청구인 어머니가 “이 사안 죄송한 마음뿐이고, 이 사안 관련이 빨리 마무리돼서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하고 나왔음.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의 권한이 아니라 위원들의 결정사항임.

나. 청구인은 기본적 판단요소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측면에서는 타 학생과 판단은 같았으나,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화해정도에서 낮음 처분을 받아 조치 결과에 차이가 났으며,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나 사과의 의사표시를 나타낸 학생들에 비해서 청구인 측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를 하고 싶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였고, ‘저는 피해학생에게 신고당한 서류는 일체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조사도 거부합니다.’라고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청구인과 피해학생 주장의 쟁점 대립 부분에 대해 청구인 조사 동의도 강력히 거부하였음.

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모든 가해학생에게 화가 나지만 청구인에 대해서 특별히 화난 상태로 강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라. 학폭위에서는 진술서와 보고서, 관련 학생들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의 가·피해 정도를 파악했으며,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관련학생들이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 행정심판에 서의 구술심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고, 2019. 3월 말부터 1개월 동안 청구인을 포함한 6학년 0반 4명, 6학년 0반 3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지칭하는 ‘달***’ 라는 단어를 만들어 ‘니 여친 달***, 지금 ~ 안하면 넌 달***야’ 라고 노래를 부르며 피해학생을 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이 키가 작다는 이유로 2개월간 지속적으로 청구인을 놀린 사실 및 청구인의 모친이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의 분리를 요청한 사실,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6학년 0반으로 학급을 교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의 별명을 부르면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피해학생이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1시간 처분을 하였으며,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학폭위에서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을 결정할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3호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따돌림 행위에 가담한 6학년 4반 학생 4명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에 그친 점,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려서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감정이 누적되어 있어서 화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처분은 관련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반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